

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

(전승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-60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5. 31.

발 의 자 : 전승학, 강희향, 김윤정,
김효식, 문정애, 백남환,
송병길, 신종갑, 이봉수,
이필레, 이학래, 허정행

1. 제안이유

마포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과 업무범위 등을 지정하고, 단순 업무의 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재능과 관심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구 본청 및 소속기관,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마포구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 (안 제2조)
- 나. 아르바이트 운영시기와 근무방법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다. 아르바이트 운영계획 수립 및 기관 수요조사 (안 제5조)
- 라. 아르바이트 대상자 선발 (안 제7조)
- 마.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운영 및 보상 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
3 조 례 안 : 붙임

4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대학생 아르바이트(이하 "아르바이트"라 한다)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1. 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(「평생교육법」 상의 대학교 학생 제외, 이하 같다)
2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

제3조(운영시기)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근무방법)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구 본청, 동 주민센터, 소속기관 및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(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)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

제5조(수요조사)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고,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3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.

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수요부서, 업무형태,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.

제6조(신청)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신청서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.

③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,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
제7조(대상자 선발)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② 제1항을 고려한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때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.

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임금기준)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.

제9조(프로그램 운영)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보상)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,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』에 따른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·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